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나. 용어정의(안 제2조)

- 1)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은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에 신설하여,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다. 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은 ‘자원 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령에 일괄 반영

라. 수행실태 ‘평가’ 신설에 따른 ‘포상’ 근거 마련(안 제44조)

- 1) 기존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근거 부족하여, 법률 제25조의2조항에 “확인·점검”을 “확인·평가”로 개정완료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하고,
- 2) 이를 확인·평가와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체연습 실시명령권자 표현 명확화(안 제35조)

- 1) 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 실시 명령권자를 행안부장관으로 규정하나, ‘2개 부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 2)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을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걸치는 자체연습’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바. 관계기관 직원파견 근거 마련(안 제46조)

- 1) 중앙, 지자체의 비상대비태세 훈련시(전·후 포함)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직원 파견에 대한 조항(법률 제25조제2항)이 “마련되어,

2) 신규조항을 두어, 목적별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기간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부연습”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연계하에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훈련을 말한다.
3. “자체연습”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부문별로 실시하는 자체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10조의2 전단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

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을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22조제14호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을 “매년”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정부연습”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자체연습 중 법 제16조에 의한 실제훈련은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훈련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의 방법·시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제1항의 자체연습 중 법 제16조에 의한 도상훈련은 별도의 승인없이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2개부처 이상의 부문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제44조의 제목 “(비상대비업무 확인·점검)”을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점검”을 “확인·평

가”로 한다.

제4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확인·평가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단에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협의·파견된 비상대비 관계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제 46조에 명시된 기간에 추가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비상대비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대비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하는 직원 :

법 제14조에 의한 훈련기간 및 전·후 각 14일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사후평가,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

하여 파견하는 직원 : 법 제14조에 의한 훈련기간 및 전·후 각 90일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호,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1호, 제22조제15호, 제31조제1항,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u>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 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 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 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 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 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과 이 영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 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부연습”이란 법 제14조제 1항에 따라 정부가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 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훈련을 말한다. 3. “자체연습”이란 법 제14조제 1항에 따라 비상대비책임기관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점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
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
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
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
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
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
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

의 장이 소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이나 부문별로 실시하는 자체
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점검) -----
---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
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은

-----.

-----.

제22조(훈련의 면제) -----

-----.

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1. ~ 13. (생략)

14.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생략)

제34조(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練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생략)

제35조(자체연습)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

-----.

1.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2조제1호나목-----

15. (현행과 같음)

제34조(정부연습) ① ----- 매년

정부연습-----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자체연습) ① 비상대비책임기관-----
----- 매년 -----

삭제>

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신 설>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② 제1항의 자체연습 중 법 제16조에 의한 실제훈련은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훈련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의 방법·시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제1항의 자체연습 중 법 제16조에 의한 도상훈련은 별도의 승인없이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2개부처 이상의 부문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① -----

----- 확인·평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에

<신 설>

대한 확인·평가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단에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협의·파견된 비상대비 관계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제 46조에 명시된 기간에 추가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비상대비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대비 관계기관 간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하는 직원 : 법 제14조에 의한 훈련기간 및 전·후 각 14일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사후평가,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직원 : 법 제14조에 의한 훈련

	<u>기간 및 전·후 각 90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4331